

법원으로 출근하는 영화평론가의 이야기

이투데이

송석주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 내부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이 있다. '대장동 사건',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삼성물산 부당 합병' 등 우리나라의 주요 재판들이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

돌이켜보면 참 낭만적인 생각이었다. 나는 영화 글을 전문적으로 쓰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해 영화이론을 전공했다. 한국에서 전업 영화평론가로 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대학원 수료 후 생계를 위해 '독서신문'이라는 출판전문지에 입사했다. 우연히 기자가 된 셈이다. 서평을 쓰고, 작가를 인터뷰하는 일은 적성에 맞았다. 가끔 영화평도 썼다. 전공이 영화라 그런지 매일 쓰는 서평은 반응이 없었고, 가끔 쓰는 영화평에 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로 인해 외부적으로 영화 관련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기자로 일하면서 영화 공부를 놓지 않았다. 독서신문 재직 중 문화잡지 '쿨투라'를 통해 영화평론가로 등단했다. 윤성현 감독의 영화 <파수꾼>(2011)을 퀴어(queer)적인 관점에서 비평한 글로 당선됐다. 심사위원으로부터 "비평의 지평을 확장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평을 읽고 가슴이 울렁거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등단 이후 영화 관련 일은 더욱 늘어났다. TBN 라디오 영화 코너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는 등 기자와 영화평론가 사이를 오가며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갔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지난해 열린 제75회 칸영화제 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한국 기자들과의 인터뷰 이후 사인을 하는 모습

어렵게 말(馬)을 구하면, 종을 부리고 싶은 게 인간이다. 문제는 돈이었다. 일은 즐거웠지만, 박봉을 견디기 힘들었다. 중소기업 직장인으로서 3년 차는 이직의 적기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랑(기자 커뮤니티)에서 이투데이 문화전문기자 채용 공고를 보았다. 솔직히 나는 이투데이라는 매체를 잘 몰랐다. 검색해보니 중견급 경제 일간지였다. 경제신문 기자가 다른 기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다는 건 알았다. 모집 분야도 ‘문화전문기자’였기 때문에 출판과 영화 지식을 겸비한 내가 경쟁력이 있을 거로 생각했다.

생각이 맞았다. 나는 이투데이에 문화전문기자로 입사했다. 연봉이 꽤 올랐고, 하는 일도 독서신문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이직한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쿨투라 편집부로부터 함께 칸영화제 취재를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 등단한 잡지사로부터 비용을 전액 지원받아 가는 것이라 회사도 반려할 이유가 없었다. 이 소식을 부장에게 알렸더니 좋은 기회라며 다녀오라고 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칸영화제 프레스 발급 절차를 밟았고, 나는 이투데이 창간 후 처음으로 칸영화제 출장을 갔다.



뤼미에르 극장 내부에 있는 프레스센터. 세계 각지의 기자들이 영화를 보고 난 뒤 이곳에서 저마다의 관점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칸영화제 출장 중에 있었던 일이다. 현지에서 친해진 국내의 한 영화제 프로그래머 A 씨가 나를 자신의 지인에게 소개하는 자리였다. A 씨는 날 가리키며 “여기는 이데일리 송석주 기자님”이라고 했다. 나는 A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데일리가 아니라 이투데이예요”라고 했고, 그는 “아! 죄송해요. 머니투데이였죠?”라며 다시 나를 지인에게 소개했다. 나는 A 씨에게 “머니투데이가 아니고요. 이투데이입니다”라고 재차 정정했다. A 씨는 내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고, 나는 괜찮다며 웃었다.

이투데이는 업계에선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매체다. 네이버·카카오와 콘텐츠 제휴(CP)가 돼있지 않은 이유가 크다. 이투데이 기사를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모든 직장인이 그렇겠지만,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는 일은 참 난처하다. 특히 기자가 취재할 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이 소속된 매체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건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마이너스다. 아무튼 현장에서 이데일리나 머니투데이 기자를 만나면, 묘한 동류의식을 느낀다.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으로 가는 오솔길. 법원 기자들이 검찰로 넘어갈 때 이 길을 지나다. 칼바람이 부는 검찰과 삭막한 법원 사이의 완충 지대인 셈이다.

칸과 서초동 사이에서

칸영화제 출장을 다녀오고 3개월이 지난 2022년 9월의 일이다. 나를 문화전문 기자로 채용했던 임원진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고, 새로운 대표와 편집국장이 부임했다. 이들은 전 임원진이 확대한 문화부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문화전문기자로 뽑힌 내가 다른 부서로 가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사회부 법조팀에 배치됐다. 3년 넘게 책과 영화 등 문화 관련 취재만 하다가 하루아침에 법조 기자가 된 것이다. 칸 출장 당시만 해도 내가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

방법원으로 출근하게 될지 몰랐다.

일반인이 법원에 올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나도 법조팀으로 배치되면서 처음 법원에 왔다. 법원의 느낌은 병원과 비슷하다. 설명할 수 없는 우울함이 도사리고 있는 곳. 무죄를 선고받거나 완치 판정을 받으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곳.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넘실대는 곳이 바로 법원과 병원이다. 그중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은 우리나라의 주요 재판들이 열리는 곳이다. 법원 출입 기자들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대장동 사건부터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삼성물산 부당 합병 등 굵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 사이에 위치한 휴게실이다. 이 공간에서 영감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의 리틀포레스트'라는 제목의 기사수첩을 썼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법원 구성원들도 이곳에서는 활짝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직한 재판들이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

법원 기자들은 서로 도울 일이 많다. 큰 재판은 온종일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매체가 순번을 정해 한 시간씩 돌아가며 법정에 들어간다. 바로 '풀 당번'이다. 풀 당번 기자는 취재한 재판 상황을 다른 기자들과 공유해야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주고받는 말들을 실시간으로 받아 적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처음 들어간 풀 당번은 삼성물산 부당 합병 재판이었다. 법률 용어와 회계 용어가 뒤섞여 내 고막을 때렸다. '법인격의 형해

화', '공소장 일본주의', '깊은 내가력' 등 지금도 헛갈리는 단어들을 그때 처음 들었다.

법원에 배치된 지 3주 정도 됐을 때, 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참석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자 피해자 가족이 사형을 요구하며 오열했다. 법정이라는 공간 자체도 여전히 낯설었지만, 영화로만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니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영화평론가로서 나는 수

기자수첩

송 석 주 / 사회경제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과 서관 사이에는 작은 숲이 있다. 진짜 숲이 아니라 제법 많은 나무를 심어 숲처럼 조성한 휴게 공간이다. 대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법원 구성원들도 그곳에서는 차를 마시며 환하게 이야기꽃을 피운다. 인간의 유전자에는 자연에 대한 애착과 화기 분방이 내재해 있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바이오피λία(biophilia)'

서울중앙지법의 '리틀 포레스트'

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자연 친화(自然親和)다. 그만큼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친근함과 안전함을 느낀다는 말일 것이다. 임신에 감독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취업에 실패하고 낙향한 혜원(김태리)의 이야기를 그린다. 제목 리틀 포레스트(little forest)는 물리적 환경보다는 심리적 환경에 가깝다. 숲이 지질 때 연필도 ?

마지막 공판에서 기자들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말을 정신없이 받아치다가 잠깐 고개를 드는 순간이 있다. 바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할 때다. 진술에는 보통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간다. 검사도 그 순간에는 결노절로 피고인을 본다. 새로운 삶을 운운하며 울먹이는 피고인이 땀뻘스라워시킬 수도 있고, 인

는 분방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기해자 서사'를 말하려는 게 아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 각자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작은 숲이 있었다면 이처럼 분방한 순간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의 토로다. 법원에 있는 '리틀 포레스트'를 볼 때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작은 숲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이고 정의를 저울질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이 할 나 있는 로니마 접속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마음

청사 휴게실에 대한 단상을 녹인 기자수첩 지면. (이투데이 2023년 3월7일자 22면)

기자수첩

송 석 주 / 사회경제부



에이즈 걸린 변호사가 법을 사랑한 이유

지난달 21일 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사회보장 자원에서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생활 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

아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해당 판결문을 입수해 읽고자 한 대목에 서 오랫동안 눈감아 버렸다. 재판부는 판결문 앞면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가끔 사건이 아닌 사람이 담긴 판결문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인간의 마음을 극진히 흔드는 짧은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기분에서 읽는다. 물론 판결문과 단락을 같은

이번 판결이 많은 사람에게 불만을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살아갈 희망을 주었다. 당시의 불만만 이나의 희망이 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판결문의 문구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법이 사회적 소수자의 삶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주었기 때문이다. 유능한 변호사였지만, 에이즈에 걸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엔드루는 법원에서 '왜 법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이따금,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정의

를 구현하는 데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정말 전율을 느낍니다.' ssp

2023년 3월 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그것에 대한 단상을 녹인 기자수첩 지면(이투데이 2022년 12월27일자 22면)

많은 법정영화를 보았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을 스크린으로 마주했다면 “또 신파네”라며 혹평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김 씨 항소심 선고 이후 나는 '법정과 법정영화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기자수첩을 썼다. '몸'이 아닌 '말'의 액션을 선보이는 법정영화는 이성적이어야 한다. 논리가 없는 법리적 공방은 유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크린이 아닌 실제로 마주한 법정은 이성과 감성이 소용돌이치는 복잡 다단한 공간이었다. 신파라는 단어로 농치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내 몸을 휘감았다. 그에 대한 단상을 기자수첩에 녹였다. 다음날 회사 선배가 “기자수첩 잘 봤다”며 칭찬해주었다. 나는 그렇게 조

금씩 법원 생활에 적응해갔다.

내가 법원에서 배운 것

법원에 출입하며 비로소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법조팀에 배치되면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서평이나 영화평은 기사가 아니다. 문자 그대로 평론이다. 또 법원은 모든 사건의 종착지다. 법원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의 맥락을 섭렵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거의 매일 사건의 당사자들을 만난다. 그 일이 참 쉽지 않다. 감정이입을 잘하는 편이라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도 무거운 형을 받고 구속되는 모습을 보면, 그날은 종일 마음이 편치 않

다.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하는 일 역시 여전히 어렵다.

요즘 나는 기자들을 만나면 “저 영화 평론가예요”라고 말하고, 학계 사람들을 만나면 “저 기자예요”라고 말한다. 어디에도 온전히 소속되지 못한 이방인의 회피 전략이다. 기자란 무엇인가? 아니, 무엇보다 나는 어떤 기자인가? 그 질문에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회식 자리에서 편집국장이 “법원 할 만해? 힘들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배우는 게 있지?”라고 물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긍정하면 계속 법원에 놔둘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한다.

마약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미성년 피의자에게 2심에서 감형을 선고하며 “부디 사회인으로 잘 적응하기 바란다”고 말한 판사.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2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방청석에 있는 가족을 보며 하염없이 울던 피고인. 초등생 아들이 음주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청담동 스쿨존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법정에서 흘렸던 눈물. 재판에서 승소했다며 기자실로 향하는 나에게 법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던 어느 남성.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판사에게 항의하던 전직 검사.

이들은 언어로 산출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내 마음에 아로새겼다. 법원은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과 맞닿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권의 최후 보루이기도 하다. 사회 정의를 저울질하는 이 공간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나? 2023년 3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사건이 아닌 사람이 담긴 판결문을 만날 때, 나는 이미지가 아닌 글자로 상영되는 영화를 보는 기분에 사로잡힌다.

현재 나는 법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감정을 영화와 엮어서 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리틀포레스트’, ‘에이즈 걸린 변호사가 법을 사랑한 이유’, ‘대장동 사건과 스프메의 문단속’ 등의 글에서 나는 사건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했다. 결국 사람이다. 영화에 ‘배우’가 있다면, 법원에는 ‘사람’이 있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법원에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법원에서 내 마음을 통과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싶다. 그 목소리가 독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위로한다면, 더없이 영화(榮華)로울 것 같다. 🍀

이투데이 송석주 기자